

기관명

수 신

(경유)

제 목 보훈특별고용통지서 송부

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.

제 호		보훈특별고용통지서			
고용 의무자	업체등명				
	대표자명			전화번호	
	소재지				
취업지원 대상자	보훈번호			5·18민주 유공자와의 관계	
	성명			생년월일 (성별)	()
	주소			전화번호	
	학력			전공	
	자격·면허			고용직종	
붙임: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19호서식의 취업자 통보서 1부.					
※ 유의사항					
1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5항에 따라 위 취업지원 대상자를 30일 이내에 고용해야 하며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취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발급한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붙임의 취업자 통보서[서식은 국가보훈부 취업정보 시스템(http://job.mpva.go.kr)에서 제공]를 송부해야 합니다.					
2.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0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.					

끝.

발 신 명 의

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

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)

접수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)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 ()

팩스번호 ()

/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

/ 공개구분